<특집(特輯)>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成慶麟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종묘(宗廟)가 이룩되기는 태조(太祖) 4년(年) (1395년(年))의 일이다.

대궐(大闕)을 지금 경복궁(景福宮)에 정(定)하고 오른편에 사직(社稷)을 모으고 왼편에 종묘(宗廟)를 앉혔는데 이것은 이른바 좌묘우사(左廟右社) 고제(古制)에 의(依)한 것이었다.

태조(太祖) 4년(年) 윤(閏)9월(月) 종묘(宗廟)가 준공(竣工)되자 태조(太祖)게서 위(位)에 오르시면서 추존(追尊)해 뫼신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네분 조상(祖上)과 그 배필(配匹)이신 왕비(王妃)의 신위(神位)를 받들어 이 신묘(新廟)에 이안(移安)한 것이다.

그해 10월(月) 갑오(甲午)일(日)에 태조(太祖)께선 강사포(絳紗袍) 입으시고 원유관(遠遊冠) 쓰시고 상로(象輅)에 높이 앉아 백관(百官)이 숙숙(肅肅)히 전도(前導)해 받드는 가운데 태묘(太廟)에 납시어 사배례(四拜禮)를 행(行)하셨다.

이튿날엔 위의(威儀)도 엄연(嚴然)히 복(服)으로 갈아 입으시고 태묘(太廟)에 친히 작헌례(酌獻禮)를 받들어 모신 것이다.

이때 아헌례(亞獻禮)는 세자(世子)가 올리고 종헌례(終獻禮)는 우의정(右議政) 김사형(金士衡)이 공손(恭遜)히 올려 받들었는데 친제(親祭)를 끝내고 환궁(還宮)하시어 하례(賀禮)받드시는 일이 또한 기쁘고 즐거우셨다.

한말로 종묘(宗廟)라고 하지만 오늘날 종묘(宗廟)는 정전(正殿)인 종묘(宗廟)와 별묘(別廟)인 영녕전(永寧殿) 두곳을 일컫고 있다.

정전(正殿)은 곧 종묘(宗廟)인데 태조대왕(太祖大王)을 비롯하여 세실(世室)로 정(定)한 제왕(帝王)와 그 후비(後妃)를 합(合)하여 모두 48위(位)의 신주(神主)를 19실(室)에 봉안(奉安)한 곳이다.

고조(高祖) 이상(以上)의 신주(神主)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영녕전(永寧殿)에 봉안(奉安)하고 재위시(在位時) 공적(功績)이 많았던 임금의 신주(神主)를 조천(祧遷)하지 않고 태묘(太廟)에 영세(永世) 봉안(奉安)하는 것을 세실(世室)로 정(定)하여 매년(每年) 사맹월(四孟月)과 납일(臘日) 다섯 번 대제(大祭)를 드렸던 것이다.

정전(正殿)에는 따로 공신당(功臣堂)이 부속(附屬)되어 있는데 태조(太祖)로부터 순종(純宗)까지 27대(代)를 통한 93위(位)의 공신(功臣)이 배향(配享)되어 있고 일년(一年)에 한번 동향(冬享)에 한(限)하여 정사(亭祀)하였던 것이다.

종묘(宗廟)는 태조(太祖) 4년(年)에 창건(創建)되고 선조(宣祖) 25년(年)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소실(燒失)된 것을 선조(宣祖) 41년(年)(1608년(年)) 재건(再建)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영녕전(永寧殿)은 별묘(別廟)인바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선대(先代) 4조(祖) 즉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를 비롯하여 정종(定宗), 문종(文宗), 단종(端宗)등 조천(祧遷)된 제왕(帝王)과 그 후비(後妃)를 합(合)하여 모두 32위(位)의 신주(神主)를 15실(室)에 봉안(奉安)한 곳이다.

영녕전(永寧殿)은 춘향(春享)과 추향(秋享) 즉 종묘제향(宗廟祭享)과 동일(同日)에 대제(大祭)를 드려 년(年) 이향(二享)으로 받들었다.

세종(世宗) 3년(年)(1421년(年)) 창건(創建)되었다가 선조(宣祖) 25년(年) 임진왜란(壬辰倭亂)에 소실(燒失)되었고 선조(宣祖) 41년(年)에 재건(再建)되어 몇 차례의 증축(增築)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종묘제향(宗廟祭享)에 아악(雅樂)을 아뢰었다는 것은 태종실록(太宗實錄)의 다음의 기록(記錄)으로 알 수 있다.

즉 태종(太宗) 9년(年) 기축(己丑) 사월조(四月條)에 태종(太宗)께서 이르시길

예악(禮樂)은 무서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구습(舊習)을 인순하여 종묘(宗廟)에 아악(雅樂)을 쓰고 조회(朝會)에 전악(典樂)을 쓰고 연향(讌享)에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질주(迭奏)하여 난잡(亂雜)하기 이를데 없으니 어찌 예악(禮樂)이라 이를까보랴. 아악(雅樂)과 당악(唐樂)을 참작개정(參酌改正)하여 종묘(宗廟)에 쓰고 또 조회연향(朝會讌享)에 쓰는게 가(可)하니 그 일에 따라 음악(音樂)을 달리하는게 옳을 것이다.

여기 황희(黃喜)가 대답(對答)하여 가로되

향악(鄕樂)을 씀이 오래어, 능히 고치기 어려우니이다.

하메 태종(太宗)께서

그 그릇된 줄은 알고도, 익힘이 오래다 하여 고치지 않는게 옳은 것인가 준정히 이르신 것이다.

그러나 성명(聖明)하신 임금은 세종(世宗)이시다. 세종(世宗) 7년(年) 을사(乙巳) 십월(十月) 대왕(大王)은 친(親)히 종묘(宗廟)에 작헌(酌獻)하시고 환궁(還宮)하시어 이조판서 허조(許稠)에게 이렇게 본부하시었다.

우리나라는 본디 향약(鄕樂)을 익히어 써왔거든 종묘대제(宗廟大祭)에 먼저 당악(唐樂)을 아뢰고 겨우 종헌(終獻)에 이르러서야 향악(鄕樂)을 쓰니 앞으로는 조고신령(祖考神靈)께서 평일(平日)에 익히 귀에 하시던 향악(鄕樂)으로 쓰는 것이 어떠한지 맹사성(孟思誠)과 상의(相議)하라

그러나 세종(世宗) 8년(年) 병오(丙午) 사월무자(四月戊子)에 봉상판관(奉常判官) 박(朴)연의 상서(上書)에 의하면

아조(我朝) 종묘(宗廟)의 악(樂)은 모두 아악(雅樂)을 쓰는 것은 바르나 그 용악(用樂)의 법도(法度)에 이르러는 전혀 착론(着論)이 없다.

고 난힐(難詰)하고 있다.

이로서 보면 국초(國初)에는 아악(雅樂)을 쓰고 세종(世宗)때에는 향당악(鄕唐樂)이 교주(交奏)되다가 다시 아악(雅樂)으로 환원(還元)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券) 제(第)138에

국조(國朝)의 고취악(鼓吹樂)은 수실록(受實錄) 몽금척(夢金尺) 근천정(覲天庭) 수명명(受明命)으로 모두 각각 일사(一事)를 주장하여 조종공덕(祖宗功德)의 성대(盛大(代)와 체조(禘造)의 간난(艱難)함을 형용(形容)하지 못하였다. 세종(世宗)께서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鄕樂)을 인연하여 신악(新樂)을 창제(創製)하니 가로되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 발상(發祥) 봉래의(鳳來儀)라 이제 삼가 기록(記錄)한다라고 보이고 있다.

말할것도 없이 수보록(受寶籙) 몽금척(夢金尺)은 태조(太祖)의 일을 송 (頌)한 악

장(樂章)이오 근천정(覲天庭) 수명명(受明命)은 태종(太宗)을 살부린 악장(樂章)들이다.

여기 새로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鄕樂)에 기(基)하여 제정(制定)한 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 발상(發祥) 봉래의(鳳來儀)등은 일사(一事)를 일삼지 않고 조종공덕(祖宗功德)의 성대(盛大)와 체조(諦造)의 간난(艱難)을 모두아 형용(形容)하였다는데에 큰 의의(意義)를 찾을 것이다.

이중에서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은 그 뒤 종묘(宗廟)의 제악(祭樂)으로 사용(使用)되어 오기 때문에 여기 내용(內容)을 일별할 필요(必要)가 있을 것 같다.

조종(祖宗)의 무공(武功)을 형용(形容)한 정대업(定大業)은 다음의 15곡(曲)이다.

소무(昭武) 인입(引入)
독경(篤慶) 목조(穆祖)
탁정(濯征) 〃
혁정(赫整) 태조(太祖)
신정(神定) 〃
개안(凱安) 〃
지덕(至德) 태조(太祖)
체영(體令) 〃
순응(順應) 〃
정세(靖世) 태종(太宗)
화태(和泰) 〃
운요(雲耀) 태종(太宗)
숙제(肅制) 〃
영관(永觀) 인출(引出)

조종(祖宗)의 문덕(文德)을 형용(形容)한 보태평(保太平)은 다음의 11곡(曲)이다.

희문(熙文) 인입(引入)
계우(啓宇) 목조(穆祖)
의인(依仁) 익조(翼祖)
형광(亨光) 익조, 도조(度祖)
보칠(保七) 환조(桓祖)
융화(隆化) 태조(太祖)
창징(昌徵) 태종(太宗)
정명(貞明) 원경왕후(元敬王後)
대동(大同) 조종문덕(祖宗文德)
역성(繹成) 인출(引出)

종묘제례악연주광경(宗廟祭禮樂演奏光景)(일(一))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이 세종(世宗)때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鄕樂)에 기(基)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종묘(宗廟)의 제악(祭樂)으로 채용(採用)되기는 세조(世祖)때에 이르러서의 일로 알려있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군(聖君)이신데다가 음율(音律)에 정통(精通)하시어 종전(從前)의 누습(陋習)을 소세(掃洗)코자 하시었는데 때마침 기장이 해주(海州)에서 나왔고 채석(採石)이 남양(南陽)에서 났으니 이것은 다 하늘이 화기(和氣)를 동방(東方)에 펴시고 대사업(大事業)을 하실 군왕(君王)을 내주시어 새로 제작(制作)케 하신 것이다(중략(中略))

세종대왕(世宗大王)은 더욱 음악(音樂)에 정통(精通)하사 가곡(歌曲)을 많이 만드시었고 또 제사악(祭祀樂)을 선정(選定)하사 종묘(宗廟)에 쓰시었다. 세조(世祖)께서 그것을 작성(作成)하신 방법(方法)은 선왕(先王)의 뜻을 추종(追從)한 것이었는데 생각하면 그때 찬조자(贊助者)가 없었던 것이 가탄(可嘆)하다…….

악학궤범서(樂學軌範序)를 동방학지(東方學志) 제이집(第二輯) 소수(所收) 이혜구(李惠求) 박사(博士)의 악학궤범역주(樂學軌範譯註)에서 인용(引用)하였다. 정확히 말해서 세조(世祖) 9년(年) 소제(所製)의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이 가사(歌詞) 구수(句數)가 너무 많아 젊은 최항(崔恒)에게 명(命)하사 그 뜻은 두어두고 많이 줄이어 친(親)히 종묘(宗廟)에 아뢰인바 이것이 곧 신제(新制)의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으로 오늘토록 전래(傳來)하는 종묘악(宗廟樂)이 바로 이것이다.

세조(世祖)때 줄이어 고친 정대업(定大業)과 보태평(保太平)이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정대업(定大業)

소무(昭武)

독경(篤慶)

탁정(濯征)

신정(神定)

정세(靖世)

선위(宣威)

분웅(奮雄)
순응(順應)
선위(宣威)
혁정(赫整)
영관(永觀)
보태평(保太平)
희문(熙文)
기명(基命)
귀인(歸仁)
형가(亨嘉)
집녕(輯寧)
융화(隆化)
현미(顯美)
용광(龍光)
정명(貞明)
대수(大綏)
역성(繹成)

인입장(引入章) 희문(熙文) 인출장(引出章) 역성(繹成) 헌례장(獻禮章)은 기명(基命)아래 9곡(曲)으로 되었다.

그러나 현존(現存)의 보태평(保太平)은 용광(龍光)과 정명(貞明)이 합(合)하여 1곡(曲)이 되고 다음에 중광장(重光章)이 삽입(揷入)되었는데 이것은 인조(仁祖)때 선조대왕(宣祖大王)의 광국중흥(光國重興)의 위업(偉業)으로 악장(樂章) 하나를 추가(追加)하였기 때문이다.

종묘대제(宗廟大祭)의 향사일시(享祀日時)는 태음력(太陰曆) 사맹삭(四孟朔) 상순내(上旬內)에서 택일(擇日)하였고 납향일(臘享日)을 합(合)하여 년오향(年五享)이었는데 고종(高宗) 광무년간(光武年間)부터 납향제(臘享祭)를 폐지(廢止)하고 제석전야(除夕前夜)에 행(行)하나 이를 세모제(歲暮祭)라 하여 역시(亦是) 오향(五享)이었던 것이다.

1911년(年) 다시 세모제(歲暮祭)가 폐지(廢止)되고 다만 사맹삭(四孟朔)에만 형사(亨祀)하니 정월(正月)은 춘향(春享) 사월(四月)은 하향(夏享) 칠월(七月)은 추향(秋享) 십월(十月)은 동향(冬享)이었다.

그러나 행사(行祀)는 택일전야(擇日前夜) 9시(時)에 행사(行祀)하니 이를 입제일(入祭日)이라 하였고 택일정일(擇日正日)은 따로 행일(行日)이라 불렀다.

1939년(年) 춘향(春享)부터 태양력(太陽曆)으로 바꾸어 즉 삼월(三月)(춘향(春享)), 유월 (六月)(하향(夏享)), 구월(九月)(추향(秋享)), 십이월(十二月)(동향(冬享)) 사삭(四朔) 상순내(上旬內)로 택일(擇日)하여 당일(當日) 오후(午後) 7시(時)에 행사(行祀)하고 영녕전(永寧殿)은 삼월(三月)과 구월(九月) 두차례 종묘(宗廟)와 동시(同時)에 행사(行祀)하여 8・15까지 계속(繼續)되었던 것이다.

종묘대제(宗廟大祭)의 주악(奏樂)의 차서(次序)는 다음과 같다. 영녕전(永寧殿)도 같다.

영신(迎神)
존폐례(尊幣禮)

진찬(進饌)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철변두(徹籩豆)
선신(選神)

입제일(入祭日) 전일(前日) 악원(樂院)에서는 습의(習儀)가 행(行)한다. 집사(執事) 집주(執籌), 집박(執拍), 가(歌), 차비(差備), 승무(僧舞)등 명단(名單)을 적은 이른바 판도(判圖)를 수석전악(首席典樂)이 들고 먼저 점호(點呼)가 있다.

차비(差備)는 차비(差備)악수(樂手)요 속무(俗舞)는 속무악수인바 각각 제 자리에 앉고 서는 것이다. 행례(行禮)의 차례대로 악(樂)·가(歌)·무(舞)의 연습인 것인데 영녕전과 동향인 때는 두 번을 치뤄야 하고 인원도 수다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행사(行事)당일(當日)은 주간(晝間)에 수전원(手傳員)이 풀리어 종묘(宗廟)에 나가 악기(樂器)를 진설(陳設)하고 대제(大祭)가 끝나면 또 악기를 거두어 악기고(樂器庫)에 넣었다.

시간(時間)의 악기(樂器)진설도(陳設圖)는 아래와 같다.

登歌(堂上樂)

		觱篥	祝
	牙箏	觱篥	編鐘
執事		觱篥	
		歌	
		歌	杖鼓
	執拍		
		大笒	節鼓
執籌			編□
		大笒	方響
軒架(堂下樂)			
	方響	奚琴	
	編□	大笒	
	祝		
	杖鼓	大笒	
執拍	觱篪	觱篥	大平簫
		觱篥	大笒
	晉鼓	觱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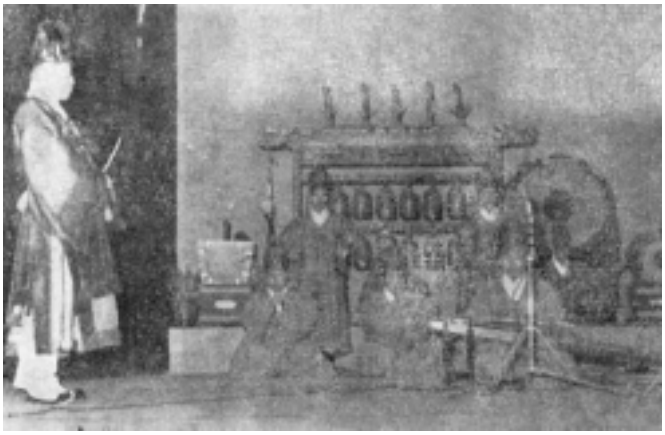

종묘제례악연주광경(宗廟祭禮樂演奏光景) 이(二)

이밖에 36인의 육일무(六佾舞)가 더하여 단향(單享)에만도 총 72인이 거행하였고 영녕전과 동향(同享)인 때는 배수(倍數)인 244면의 악인(樂人)이 동원(動員)되어야 하였다.

종묘(宗廟)대제(大祭)의 행례(行禮)는 당상(堂上)집례(執禮)의 창홀(唱笏)로 진행되나 음악이 불가분(不可分)으로 병행(竝行)되는 만큼 집사(執事)악사(樂師)의 소임(所任)이 큰 비중(比重)을 가지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알자(謁者)(수복(守僕))의 구창(口唱)이며 집례(執禮)의 창홀(唱忽)까지도 집사(執事)악사(樂師)의 협조(協助)없이는 가기(可期)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신(迎神)은 영신(迎神)희문(熙文) 구성(九成)을 아뢰는바 팔성(八成)초(初)에 악사(樂師)가 부르오를 청(請)해 알자(謁者)가 부르오를 창(唱)하면 비로서 집례가 헌관(獻官)이하(以下)개사배(皆四拜)를 창홀(唱笏)하여 사배(四拜)가 있고 구성(九成)졸장(卒章)에 또한 이 같이 하여 악지(樂止)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전폐(奠幣)는 전폐(奠幣)희문(熙文)으로 악무(樂舞)의 정수가 없으나 대개 종묘(宗廟)는 이성으로 예필(禮畢)되고 영녕전은 일성(一成)으로 악지(樂止)가 되는 것을 관례(慣例)로 하였다.

진찬(進饌)은 일무(佾舞)는 없이 악가(樂歌)만 진찬(進饌)을 아뢰고 진찬장(進饌章)을 노래하는데 또한 정수가 없어 헌관이 제말실(第末室)까지 대게 6, 7성(成)이면 당(當)하였다.

행례(行禮)에 있어 가장 무겁고 어려운 고비가 초헌례(初獻禮)이다.

인입장일곡(引入章一曲)으로 헌관(獻官)이 제1실까지 이르도록 되어야 하고 헌례장9장으로 19실 종묘(宗廟) 혹은 15실 영녕전을 적의(適宜) 안배(按排)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헌례(初獻禮)에는 대축(大祝)의 독축(讀祝)이 있고 이 사이는 번번히 악지(樂止)가 되는 것이라 집박(執拍), 편종(編鐘), 필률(觱篥) 등 차비(差備)가 몹시 심로(心勞)하는 것이다.

인출장 역성(繹成)말고 대유(大猷)까지도 완주(完奏)하여야 하는바 과불급이 모두 통하지 못하므로 10분 삼가서 봉행(奉行)하지 않으면 아니되난.

그에 대면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는 비교적 순탄하다고 할 것이다.

인8장 소무(昭武)로서 헌관이 승계(升階) 제1실에 이르는 것은 같으나 다음 작헌(酌獻)은 독축(讀祝)이 없을뿐더러 헌례장 9장으로 필주되지 않아도 무방(無妨)하여 행사(行祀)가 빨라 악곡(樂曲)이 남으면 남는대로 인출장 영관을 불면 되고 행례(行禮)가 느리어 악곡(樂曲)이 부족하면 다시 헌례 제1장 독경(篤慶)에서부터 환주하여도 허물되지 않았다.

다만 이때 대평소(大平簫)로는 두 번 분장(奮章)을 불지 않는 법(法)이어서 인입장 소무(昭武), 중광장(重光章) 분웅(奮雄), 인출장(印出章) 영관 3곡에 한하므로 아종헌을 통하여 도합 6성으로 족하였다.

철변두(徹籩豆)는 진찬(進饌) 일성

선신 또한 진찬(進饌) 1성으로 헌관이하개 4배가 끝나 악사(樂師)가 졸장을 알리면 이내 악지(樂止)를 불러 행례(行禮)는 전부(全部) 마치는 것이다.

일제(日帝)시대 아악(雅樂)부의 명맥(命脈)은 주로 종묘(宗廟)의 제향(祭享)에 좌우(左右)되었다고 말하여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문묘(文廟)의 석전(釋奠)이 있으나 이는 당시(當時)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학무국(學務局) 사회과(社會課)에서 주관(主管)하고 아악부에서는 성균관(成均館)의 악사파송의뢰에 의한 일종의 대외(對外)활동(活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악부를 존치(存置)한다는 것은 이(李) 왕가(王家)의 아악을 보존한다는 데에도 명분(名分)은 있었으나 종묘의 제향(祭享)이 없었다면 과연(果然) 어떠하였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 중란한 대제(大祭)도 1945년 조국 광복(光復)이후 사실상 폐절(廢絶)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은 참으로 우감스럽다고 아닌 할 수 없다.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이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 관장하에 현재 전수(傳授)되고 있고 연주되고 있다고는 하나 1945년이후 종묘제향의 폐절로 말미암아 종묘의 제악(祭樂)도 완전(完全) 주악(奏樂)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 연멸의 우려(憂慮)가 전혀없다고 아무도 단언(斷言)하지 못한다.

세종(世宗)실록(實錄)악보(樂譜) 세조(世祖)실록(實錄)악보(樂譜) 대악후보 속악악보 등이 비록 잔존하고 있으나 악보상으로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 실제 연주면에 있어서는 자못 미비(未備)하고 또 차이점(差異點)도 산견(散見)되는 바 이것을 정확(正確)하고 소상(昭詳)히 채보(採譜)하고 아울러 실제 연주를 녹음하여 그 영구보존에 완벽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종묘에서의 행례(行禮)와 주악(奏樂)의 모습을 생동히 영화로 촬영하는 사업도 이때를 놓지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이야말로 이조(李朝) 세조이후 400년간 전통적(傳統的) 향악(鄕樂)과 고취악(鼓吹樂)에 기한 귀중(貴重)한 음악문화재로서의 의의(意義)와 가치(價値)가 절대(絶大)한 것을 상도(想到)할 때 당국(當局)의 사악(斯樂)에 대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指定)이 시급(時急)함을 역설(力說)하는 바이다.

(필자(筆者)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 원장(院長))

순동기시대(純銅期時代)

석기시대(石器時代)부터 청동기시대(青銅器時代)에 이행하는 과도기(過渡期)에 청동(青銅)과 같은 동(銅)과 석(錫)의 합금을 발명한 이전의 단계로서 순동의 이기(利器)를 사용한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어구(語句)의 개념은 많이 혼용(混用)하고 있다.

첫째, 화학적(化學的)으로 보아서 순동(純銅)이란 말은 온당(穩當)치않은 말이다.

동기(銅器)의 성분을 분석하여 단지(但只) 석(錫)이 없다고하여, 다른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섞여있어도, 순동기라고 칭(稱)하기는 곤란(困難)하다. 또한 석 대신에 연(鉛) 등의 타금속을 혼합하여 합금으로 한 것이 청동보다 늦게 출현(出現)한것도 확실(確實)한 것이다. 그러나 금속기(金屬器)의 초기(初期)의 단계(段階)로서, 명확(明確)히 청동(青銅)이란 합금(合金)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연동 등의 전성을 이용하여 뚜드려 이기(利器)를 만들었던 시대(時代)가 있었다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제적(實際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금석병용기와 같은 의미(意味)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은 무방(無妨)하다. 오히려 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조동(粗銅)이라함이 합당(合當)할 것이다.